

서울고등법원 2024. 4. 25 선고 2023나20434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4. 25 선고 2023나2043496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9. 8 선고 2021가합110064 판결

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

피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

담당변호사 도기혁

변론종결 2024. 3. 14.

판결선고 2024. 4. 25.

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9. 8. 선고 2021가합110064 판결

## 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B과 피고 사이에 2020. 3. 3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B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3. 4. 접수 제425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4쪽 표와 ‘인정근거’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(위 표 순번 3번 기재 B의 I조합에 대한 2,509,000,000원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,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그 주채무자가 B이 1인 주주로서 운영하고 있는 G이고, G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위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,010,800,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, 해당 채무액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B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, 다른 소극재산들로 인하여 여전히 B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 수 있다. 그 밖의 채무액에 대하여는 다른 담보물을 통해 그 각 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G 혹은 C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이들을 B과 동일시하여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, 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위 두 회사의 일반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. 결국 앞서의 인정에 반하여 B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

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)』

○ 제1심 판결 제8쪽 6행의 “다른 점” 다음에 “(G와 B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)”를 추가한다.

## 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김대웅, 판사 황성미, 판사 허익수

별지